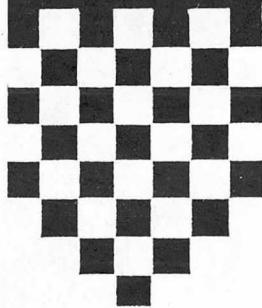


특집



정부의 오제스키병

방역정책 방향

1. 머리말

WTO체제가 시작된 금년은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어느 해 보다도 모던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모두가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만 하는 변화의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각종 농축산물이 가격과 품질에 따라 자유로이 경쟁하며 유통하는 시점이 되었으며, 국내의 축산여건도 이제는 축산물의 국제가격과의 경쟁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위생적인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양돈업계 모두가 질병 예방관리에 관심과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항생물질이나 설파제 등의 과다한 사용을 절제하여 유해물질의 잔류가 없

는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전력을 기울여야만 하겠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도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가축방역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관련법규들을 정비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방역 조직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한 오제스키병 방역정책을 설명하고, 본 병의 청정화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양돈업계, 학계와 동물약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2. 오제스키병 방역정책 추진경위

우리나라에서 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 확인된 것은 1987년 6월 경남 양산군 하북면 소재

배상호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표 1〉 연도별 검진, 양성두수 및 살처분 두수

연 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검 진	—	17,264	132,673	140,700	168,972	186,381	170,074	103,300	100,000
양 성 두 수	471	381	4,615	190	—	2	—	482	976
살 처 분 두 수	954	8,635	6,253	190	—	2	—	94	—
보 상 금 액	92	693	489	14	—	—	—	6.1	—

(단위 : 두, 백만원)

원효농장이었으며, 이에 대한 조기근절을 위한 긴급방역대책으로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전두수를 살처분 매몰하였고, 전국의 종돈장에 대한 일제 혈청검사를 실시하였다.

'88년 2월부터는 외국에서 매년 수입되는 종돈 수입물량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돼지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여, 수출국에서의 검역기간 7~15 일을 21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국내 도착시 검역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검역을 실시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오제스키병 조기근절을 목적으로 돼지오제스키병방역 실시요령을 제정·고시(농림수산부고시 제88-8호 : '88. 3. 4)하여 발생농장이 검색되면 사육중인 돼지전두수를 검사하여 양성축은 살처분하고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매 3개월마다 전 두수검사를 실시도록 하였으며, 종돈장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발생이 없는 종돈장은 “오제스키병 비발생농장” 표시

〈표 2〉 연도별 오제스키병 발생현황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경 기	110	380	4,396	—	—	—	—	309	587
강 원	—	—	69	—	—	—	—	—	—
충 북	—	—	51	—	—	—	—	—	—
충 남	—	—	—	190	—	2	—	173	389
경 남	361	1	99	—	—	—	—	—	—
계	471	381	4,615	190	—	2	—	482	976
					(1)			(14)	(11)

※(): 발생확인 농장수

(단위 : 두)

판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동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매년 오제스키병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돈군을 살처분하여 매몰하는 조기박멸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표 1〉 참조).

감염지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발생농장의 감염된 개체만을 지속적으로 살처분 도태함과 동시에 이동 제한을 실시하여 이 병의 근절을 시도하였으나, 일부지역 특히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과 남양주군 진접면의 양돈단지에서 검사거부 등 관계자의 인식부족과 검사협조결여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감염돈의 일부 유출에 따라 오히려 음성적으로 발생피해가 지속되고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따라 양돈농가의 검사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94. 4. 8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혈청검사 양성돈은 식용에 공할 수 있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을 개정(고시제 94-23호 : '94. 4. 18)하여,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이환돈은 전두수 살처분하되, 임상증상이 없는 항체양성돈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지정하는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하도록 함으로서 살처분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수산부장관은 발생농장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할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따라 '94년에는 국내개발된 오제스

기병 백신에 대한 시험접종을 추진하였다.

3. 문제점

양돈농가에서는 오제스키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오제스키병이 농장에 처음 발생되면 어린 자돈의 폐사율이 급증되고 모든의 유사산, 산자수 감소 등으로 단기간내에 심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 병이 상재화 된 농장에서는 모든의 번식장애도 호전되고 포유자돈의 폐사도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모체이행항체가 소진되는 14주령 이후의 육성돈은 결국 감염발병하여 성장률이 떨어지고 사료효율도 저하되며, 흉막폐렴, 유행성폐염 등 호흡기 질병에 민감하게 되어 피해가 커지게 되고, 약품비 등 농장방역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게 된다.

연간 모든 100두 규모를 기준으로 한 발생농장의 피해 추정액은 40~85백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제스키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내용은 <표 3>과 같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제스키병의 원인체인 허파스 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여야겠으며,

농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오제스키병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피해발생 시 그 사실을 숨기고 감염돈을 방매하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가 있어, 자기만 경제적 피해를 모면하려 하는 등 양돈농가 전체의 공동방역 참여의식이 아직도 결여되어 있다.

돼지 수송차량과 사료차량 및 수집상 등 방문객도 농장간 전염병 전파에 요인이 되므로 각농장에서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으며, 어린자돈의 설사증세가 있을 경우 돼지 전염성위장염(TGE)으로 인하여 인공감염을 야외에서 흔히 실시하고 있어, 이로인한 오제스키병의 폭발적인 발생으로 양돈밀집단지에서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다.

본 병의 조기근절을 위해서는 양돈농가와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오제스키병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49개소가 있지만, 3개~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각시험소의 경우 방역업무 담당인원이 2~3명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일선 방역인력이 부족하며 행정조직체계도 다원화되어 있어 이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정부는 돼지오제스키병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오제스키병
백신사용을 허용하고,
종돈장에서 종돈을 출하할
때는 가축위생 시험소장의
검시확인을 받은 후
판매하도록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했다.
◆

<표 3> 오제스키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

구 분	손 실 내 용
평균 산자수	0.3두 이상 감소
분만 회전율	0.2회전 이상 저하
모든 생신율	50% 이상 상승
자돈 육성률	5% 이상 저하
비육돈 증체량	5% 이상 감소
감소	
사료효율	0.3% 이상 저하
농장방역비	검사, 백신, 치료비 용등 급증

발생시의 피해를 너무 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피해를 너무 과소평가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를 커지게 하고, 이웃 다른 농장으로 계속 전파시키기 쉽다고 본다.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출하금지등의 방역조치 및 살처분·도태 처분에 따라 해당

또한, 오제스키병 방역을 위하여 현재 검토중인 백신접종에 대한 문제도, 다른 전염병의 백신과 달리 오제스키병 백신의 경우에는 완벽한 방어력이 미흡하고, 수입된 감별백신 사용시 양돈농가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도 문제점으로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4. 향후 정책방향

정부의 오제스키병 방역정책의 기본방향은 감별백신 접종을 허용함과 동시 감염축에 대한 검색과 도태를 계속 실시하여 근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보완

양돈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학계,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 고시(농림수산부령 제1995-31호 : '95. 5. 22)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제3조의 검사 대상에 밀집된 양돈단지를 추가하였고, 제5조 검사기관에는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훈령 제79호)에 의해 농림수산부장관이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수입돼지 검사를 위해 국립동

물검역소도 추가하였다.

오제스키검사방법은 현행 간이진단킷트 또는 혈청중화시험법을 간이감별 진단킷트법과 병원체검사로 변경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양돈장과 종돈장에 한해서는 혈청중화 시험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결과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한 개정된 주요 조치내용은 발생농장 사육돼지 중 모돈과 종웅돈은 전 두수 검사하되 자돈과 비육돈은 <표 1>에 정한 기준 두수 이상을 검사하도록 하였고, 시도지사는 양성축 발생농장과 전파우려가 있는 인근농장에 대하여 야외감염 개체와 백신접종 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감별백신을 접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돈능력 검정기관과 종돈장에서 종돈을 출하할 때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판매해야 하며, 종돈장의 종돈(GGP, GP)에는 오제스키병 백신을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하였고, 시험소장은 종돈장 정기검사 시 백신 사용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종돈업자, 허가·등록된 양돈업자가 동 방역실시요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검사기관의 검

사를 거부 또는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과태료 부과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주사·소독실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양축 농가의 처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도록 하여 전체 축산업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나. 오제스키병 백신사용

오제스키병 백신은 국가주도의 양성돈 검색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Test kit를 이용 시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항체와 백신바이러스에 의한 항체의 감별이 가능한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표 3>과 같이 세계적

<표 3> 세계주요국의 오제스키 백신 사용현황

국가별	오제스키유전자 결손백신
미국	g1, g1 tk gx, g1 tk, gx tk
일본	g1, g1 tk, gIII tk, gx tk
네델란드	g1, g1 tk
프랑스	g1(모돈)
스페인, 독일,	
벨지움	g1

추세이다.

가장 이상적인 오제스키 백신이란, 감염돈군에 접종할 경우 개체간 전파가 방지되어야 하고, 면역된 개체에 강독바이러스로 공격할 경우 병원체 배출이 없어야 하며, 어린자돈에 접종시 모체이행항체가 간접현상없이 방어면역을 형성해야 하고 면역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야만 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에 의하면 시판이 허용된 어떠한 백신도 완벽하게 오제스키병을 예방할 수는 없으나 접종시 임상증상을 줄이고 피해를 적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므로, 백신 사용을 위하여 현재 외국의 유수한 7개사의 사독백신 6종, 생독백신 6종의 백신에 대한 기술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검사를 위한 감별진단킷도 현재 자료심사중에 있다.

수입백신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전자 재조합 감별백신을 발생농장에 시험접종용으로 계속 지원하여 방역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5. 양돈농가에서 지켜주셔야 할 점

양돈장에서 가장 골치아픈 전염병의 하나인 오제스키병을

청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양성돈 검색을 위한 검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선정하여 필요한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병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정책보다는 양돈농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별 공동방역 참여 및 확고한 근절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오제스키병 근절을 위하여 양돈농가와 관련단체에서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가. 병든 돼지가 이 병을 옮기므로 돼지를 새로 구입할 때는 믿을수 있는 양돈장에서 구입할 것.

나. 시장이나 중간상인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할 때는 시 또는 도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혈청검사를 받아 감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다. 농장에서 가축 중계상인 등 외부방문객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함.

라. 농장에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쥐, 고양이등을 구제하도록 할 것.

마. 이 병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는 도축장 이외의 타 농장이나 중개상인에게 판매하지 말

아야 함(이동제한)

바. 이 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견될 때는 즉시 시, 도의 가축위생시험소에 연락하여 확실한 진단과 적절한 조기 방역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발생신고 농장에 대하여는 최대한 방역지원 할 계획이므로 인접농장에서 발생이 의심될 때도 신속히 신고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것.

사. 농장별 근절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돈의 신속하고 철저한 격리 및 도태가 필수적이므로, 감염개체가 많은 농장 또는 지역에서는 재감염의 기회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도태계획없이 근절대책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심할 것.

